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회는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ery 약칭 KSSF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학술연구회로서 정위기능신경외과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연수교육의 개최
2. 학술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3. 정위기능신경외과학분야 학회지 및 도서 발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시행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시행

제2장 회 원

제4조 (구성)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4. 상응하는 자격이라 함은 의사가 아닌 공학, 생물학, 기초의학자를 포함하며,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관련 자격자도 포함한다.
5.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자격 및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때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규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 본회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운영위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약간 명
5. 감사 1명
6. 전임회장단

제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단에 가입된다.

제9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결위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결위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잔여 임기동안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부회장 2인 중 1인은 당연직으로 차기회장이 되며, 회장 결위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상임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전임 회장단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 대회시 개최하고, 임시총회 및 기타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상임운영위원회)

1. 상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2. 학술, 총무, 재무, 간행, 교육, 전산 및 홍보, 보험, 회원관리, 회칙 개정의 업무를 분담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전임 회장단은 투표권 없이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운영위원은 수련병원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제5장 회 계

제14조 (자산 및 회계)

1. 본회의 자산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2.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종료 후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3. 각 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15조 (회칙 개정)

1. 본회의 회칙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참석하여, 출석위원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증을 받는다.



제7장 부 칙

1.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서 준용한다.
2. 본 회칙은 인증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3.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증 후 당해 연도 총회 이후 실시한다.
4. 본 회칙은 2000년 2월 11일 1차 개정하였다.
5. 본 회칙은 2002년 3월 8일 2차 개정하였다.
6. 본 회칙은 2007년 3월 16일 3차 개정하였다.
7. 본 회칙은 2010년 3월 27일 4차 개정하였다.

